

의안 번호	제2534호~제2535호
----------	---------------

2024. 9. 12.(목) 11:00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건
총 2건(개정 조례안 2) : 붙임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총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534호 :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535호 :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I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발 의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제1차 운영위)
제2534호	2024. 8. 27.	장성군의회의회장 (서춘경 의원)	2024. 8. 30.	2024. 9. 6.
제2535호	2024. 8. 27.	장성군의회의회장 (김연수 의원)	2024. 8. 30.	2024. 9. 6.

III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8. 27.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의회장(서춘경 의원)
- 회부일자 : 2024. 8. 3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9. 6.(제363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이유】

- 직종 개편(' 13.12.12) 이전 용어 등 문구를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24. 7. 2.) 반영과 함께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직종 개편(' 13.12.12) 이전 용어 등 문구 정비(안 제6조)
 - 방호원 → 방호직공무원 등
-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분할사용가능 횟수 확대(안 제13조제5항)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일수		분할횟수	
	현행	변경	현행	변경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5일(-)	2회	3회(+1회)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15일(+5일)	3회	5회(+2회)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20일(+5일)	4회	5회(+1회)
30년 이상	20일	25일(+5일)	5회	5회(-)

○ 경조사별 휴가일수 확대(안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1일 → 3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과 직종 개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8. 27.
- 제출자 : 장성군의회 의장(김연수 의원)
- 회부일자 : 2024. 8. 3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9. 6.(제363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이유】

-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품등의 수수금지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상향하고자 함

【주요내용】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안 별표1)
 - 現 3만원 이내 → (변경) 5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1조, 제13조의3항, 제20조제5항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 번호	제2536~2543호
----------	-------------

2024. 9. 12.(목) 11:00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8건(개정안 7, 계획안 1) : 붙임 참조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보 고 총 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536호 :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537호 :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 의안번호 제2538호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539호 : 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540호 :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541호 :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542호 :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543호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II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발 의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제1차 행자위)
제2536호	2024. 8. 27.	장성군의회의회장 (최미화 의원)	2024. 8. 30.	2024. 9. 6.
제2537호	2024. 8. 28.	장성군수	2024. 8. 30.	2024. 9. 6.
제2538호	2024. 8. 28.	장성군수	2024. 8. 30.	2024. 9. 6.
제2539호	2024. 8. 28.	장성군수	2024. 8. 30.	2024. 9. 6.
제2540호	2024. 8. 28.	장성군수	2024. 8. 30.	2024. 9. 6.
제2541호	2024. 8. 28.	장성군수	2024. 8. 30.	2024. 9. 6.
제2542호	2024. 8. 28.	장성군수	2024. 8. 30.	2024. 9. 6.
제2543호	2024. 8. 28.	장성군수	2024. 8. 30.	2024. 9. 6.

Ⅲ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8. 27.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최미화 의원)
- 회부일자 : 2024. 8. 3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9. 6.(제36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장성군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아동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놀이 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 신설 (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들의 놀이 문화 조성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8. 28.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4. 8. 3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9. 6.(제36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서명	출연기관	2024년 출연금		변경이유	관련법령
		당초	변경		
세무회계과	(재)장성장학회	0	61,726	2023년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출연을 통한 지역내 교육지원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변경계획안은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제휴카드 포인트 적립금 출연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한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8. 28.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4. 8. 3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9. 6.(제36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제 활동 주체로 청소년을 추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관련 용어의 정의 구체적 규정(안 제2조)
-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18조)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항 추가(안 제20조)
-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중복 및 오류 조항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8. 28.
- 제 출 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 2024. 8. 3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9. 6.(제36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안 제2조 별표)
 - (현행) 북이면 백양로 26 → (변경) 북이면 사남북길 3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8. 28.
- 제 출 자 : 장성군수(민원봉사과장)
- 회부일자 : 2024. 8. 3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9. 6.(제36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업무대행 건축사의 선정 기준 반영(안 제31조제1항)
 - (현행) 제한 없음
 - (개정) 전라남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 공개 공지 확보 면적 정비(안 제41조제1항제1호)
 - (현행)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개정)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8. 28.
- 제출자 : 장성군수(환경과장)
- 회부일자 : 2024. 8. 3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9. 6.(제36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공동주택 RFID 기반 종량제 방식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준(무게단위) 및 기기 설치 기준 마련
- 배출량만큼 수수료 부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발적인 감량 유도
※ RFID : 칩에 음식물쓰레기 정보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

○ 주요내용

- 종량제 방식(RFID 기기) 정의 및 설치기준 신설
- 음식물류 폐기물 중량(kg)에 의한 수수료 기준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감량 유도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8. 28.
- 제 출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회부일자 : 2024. 8. 3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9. 6.(제36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의 적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정비 및 단서 신설(안 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8. 28.
- 제 출 자 : 장성군수(보건정책과장)
- 회부일자 : 2024. 8. 3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9. 6.(제36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부서별 개정으로 인한 입법 절차의 중복성을 방지하여 입법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만 나이 포함 조문 개정 : 2개 부서 소관 / 2개 자치법규

소관부서	조 례 명	개정대상
보건정책과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건강증진과	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 번호	제2544~2546호
----------	-------------

2024. 9. 12.(목) 11:00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3건(제정조례안 1, 개정조례안 1, 의견청취 1) : 붙임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총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544호 :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545호 : 장성 백양 메이플 관광·휴양형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의안번호 제2546호 :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II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발 의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제1차 산건위)
제2544호	2024. 8. 28.	장 성 군 수 (일자리경제실장)	2024. 8. 30.	2024. 9. 6.
제2545호	2024. 8. 28.	장 성 군 수 (도시재생과장)	2024. 8. 30.	2024. 9. 6.
제2546호	2024. 8. 28.	장 성 군 수 (농업유통과장)	2024. 8. 30.	2024. 9. 6.

III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 백양 메이플 관광·휴양형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원안채택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8. 28.
- 제 출 자 : 장성군수(일자리경제실)
- 회부일자 : 2024. 8. 3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9. 6.(제36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이유】

-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드·모바일 상품권 後캐시백 지원* 전환 근거 마련

- 後캐시백 도입에 따른 상품권 월 구매 한도 상향

*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주요내용】

- 상품권 할인 지원방식 추가(안 제16조제1항)
 - (현행) 할인 판매 → (개정) 할인 판매 또는 캐시백 지급
- 상품권 월 구매 한도 상향(안 제16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드·모바일 상품권 後캐시백 지원 전환 근거 마련과 월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성 백양 메이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8. 28.
- 제 출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
- 회부일자 : 2024. 8. 3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9. 6.(제36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이유】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 및 골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골프 인구의 급증으로 골프수요를 수용함에 어려움이 있어,
- 골프장과 체류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외부자본 유입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장성 백양 메이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간적 범위

-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산28 일원
- 면 적 : 1,489,887㎡

○ 주요내용

- 용도지역 :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신설($A = 1,489,887\text{m}^2$)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건은 장성군 내 골프장과 체류형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증가하는 골프 수요를 충족하고,
- 지방재정 확충 및 외부자본 유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장성 백양 메이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6. 심사결과 : 원안채택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8. 28.
- 제 출 자 : 장성군수(농업유통과)
- 회부일자 : 2024. 8. 3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9. 6.(제36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이유】

- 장성군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스마트농업 :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등(안 제5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 번호	2547
----------	------

2024. 9.12.(목) 11:00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결 과 보 고 서

I. 심사대상

-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II.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4. 8. 28.
- 제출자 : 장 성 군 수
- 회부일자 : 2024. 9. 5.
- 상정일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9. 9. ~ 9. 11.)
 - 실·과소장 질의·답변 및 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및 의결
- 의결일자 : 2024. 9. 11.(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의결

III. 예산안 총괄

- 규 모 : 619,233백만원
- 회 계 별
 - 일반회계 : 609,858백만원
 - 특별회계 : 9,375백만원

○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합 계	619,233	583,742	35,491
일반회계	609,858	574,800	35,057
특별회계	9,375	8,941	434

IV.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V.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에서 355억원의 가용재원이 새로 발생하였음
- 이는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국·도비보조사업이 일부 증액 또는 조정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기불황이 이어져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군 전환사업, 국도비보조사업, 국도비 반환금, 인건비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한해 최소 반영하였으며, 그 동안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 등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실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민생안정과 장성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함.

VI. 질의 및 답변(토론) 요지

- 생 략

VII.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원안가결(별첨 자료 참조)
- 특별회계 : 원안가결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결과

1. 세 입 : 619,233,003천원

가. 삭감(일반+특별) : 해당없음

나. 증액(일반+특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제출 예산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619,233,003	-	-	-	619,233,003
일반회계	609,857,644	-	-	-	609,857,644
특별회계	9,375,359	-	-	-	9,375,359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2. 세 출 : 619,233,003천원

가. 삭 감

1) 일반회계 : 해당없음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증 액

1) 일반회계 : 해당없음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제출 예산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619,233,003	-	-	-	619,233,003
일반회계	609,857,644	-	-	-	609,857,644
특별회계	9,375,359	-	-	-	9,375,359

라. 삭감조서 : 붙임과 같음

1) 일반회계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계	해당없음	0	0	0

2) 특별회계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1) 일반회계 : 해당없음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증액	인정액

2) 특별회계 : 해당없음